

## 2019년도 제54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장소 및 시간 공고

2019년 6월 29일(토) ~ 6월 30일(일) 시행되는 제54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장소 및 시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6월 5일

금 융 위 원 회 위 원 장

### 1. 응시번호별 시험장소

응시번호	시험장소	소재지
196-0001 ~ 196-1859 197-0001 ~ 197-0172	제1공학관	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 (☎02-2220-0114)
197-0173 ~ 197-0617	제2공학관	
197-0618 ~ 197-1006 198-0001 ~ 198-0202	인문관	

※ 교통편 : 서울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 하차 2번 출구(도보 10분)

### 2. 시험시간

구분	시행시간	시험과목	배점
6월 29일 (1일차)	1교시 10:00 ~ 12:00 (120분) <b>09:55 이후 입실 불가</b>	세 법	100점
	2교시 13:30 ~ 15:30 (120분) <b>13:25 이후 입실 불가</b>	재무관리	100점
	3교시 16:10 ~ 18:10 (120분) <b>16:05 이후 입실 불가</b>	회계감사	100점
6월 30일 (2일차)	1교시 10:00 ~ 12:00 (120분) <b>09:55 이후 입실 불가</b>	원가회계	100점
	2교시 13:30 ~ 16:00 (150분) <b>13:25 이후 입실 불가</b>	재무회계	150점

### 3. 응시자 유의사항

- ① 응시자는 시험일 전에 시험장소 및 교통편을 확인(시험실 출입은 불가) 하시기 바랍니다.
- ② 응시자는 매 교시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고, 매 시험시작 5분 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 또한, 매 시험시간 종료 전까지 중도 퇴실할 수 없고, 감독관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중도 퇴실할 경우에는 해당 과목을 무효 처리합니다.
- ③ 감독관이 응시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등록증)을 책상 좌측 상단에 놓고 감독관의 확인에 응하여야 하며,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사진이 부착된 임시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.
- ④ 계산기는 단순 계산기능의 소형 전자계산기만 사용 가능합니다.
- ⑤ 응시자는 응시표에 응시한다고 표시된 시험과목만 응시할 수 있으며, 응시하지 않는 과목의 시험시간에는 시험실에서 퇴실하여야 합니다.
- ⑥ 응시번호가 「196-0001~196-1859」 또는 「198-0001~198-0202」인 응시자는 일부 과목 응시도 가능하며, 응시하지 않는 과목의 시험시간에는 응시자대기실 등에서 대기하다가 응시하고자 하는 과목의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입실하여야 합니다.
- ⑦ 응시번호가 「197-0001~197-1006」인 응시자는 2018년도 제2차시험에서 부분합격하지 아니한 과목을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, 한 교시라도 결시하면 그 이후 과목을 응시할 수 없고 해당 시험 자체를 무효로 하며 응시한 과목도 채점하지 아니합니다.
- ⑧ 일부 과목 응시자는 응시하지 않는 과목의 시험시간 동안 응시자 대기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응시자대기실에서는 흡연·담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, 휴대전화기 전원을 차단하는 등 시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숙을 유지하여야 합니다. (응시자대기실은 응시자의 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공간이므로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)

⑨ 시험실 내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응시자는 **개인용 시계\***를 **준비**(시험실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하여서는 안됨)하기 바라며, 휴대전화기 등 **전자기기를 시계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**

\* 계산·통신·저장·기록 등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시계

⑩ 답안은 **흑색이나 청색 필기구**(싸인펜 또는 연필 종류는 제외) 중 **단일 종류로만 계속 사용**하여 작성하여야 하며, 지정된 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채점되지 않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.

⑪ 답안지에 표기한 답안의 정정을 위하여 **수정테이프**(또는 수정액)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답안지의 **번짐·오염·탈루** 등에 따른 채점과정에서의 불이익은 **응시자 책임**입니다.

⑫ 응시자는 시험 관련 각종 공고, 응시표, 답안지 등에 기재된 **응시자 유의사항** 등을 준수하고, **감독관의 지시**에 따라야 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**해당 시험 또는 과목의 무효처리**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⑬ 시험 시작 전 문제를 풀거나,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등 **감독관의 지시**에 **불응하는 경우**, 시험시간 중 시험실 내에서 **전자기기\*** 소지 및 **흡연·담화·물품의 대여** 등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**해당 시험을 무효로** 처리합니다.

\* 휴대전화기, 디지털카메라, 카메라펜, MP3, 전자사전, 계산·통신·저장·기록 등의 기능이 있는 시계(스마트워치 등) 등

⑭ **부정행위자**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**합격 결정을 취소**하고, 그 처분일로부터 **5년간 공인회계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**됩니다.

⑮ 시험장의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**대중교통수단을 이용**하기 바라며, 차량을 갖고 오는 경우 **주차료는 본인**이 부담하여야 합니다.

⑯ 응시자는 개별적으로 **중식 도시락**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
⑰ 시험실(응시자대기실 포함) 및 복도 등 시험장 건물내에서는 **절대 금연**입니다.